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593호

2020. 7. 1.(수)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규 칙]

제4353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2

◆ 고 시

제2020-287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특수판매분야(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

집합금지명령3

자치법규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353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7월 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지방부이사관” 을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부이사관” 을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를 “지방부이사관으로” 로 한다.

제17조의4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조직 운영체계의 균형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주요 정책분야의 실행력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의 직급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동민생정책관과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직급을 현재 3급에서 2·3급으로 조정함(안 제7조의2 및 제9조).

나. 교통기획관과 보행친화기획관의 직급을 현재 2·3급에서 3급으로 조정함(안 제13조).

다. 시민건강국장 개방형직위 지정을 해제함(안 제17조의4).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87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특수판매분야(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 집합금지명령

서울시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해 특수 판매분야(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에 대한 집합을 금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집합금지명령 개요

- 대 상 : 특수판매업체(미등록, 미신고 포함) 집회 및 판매 영업장소
- 기 간 : '20.6.29. ~ 별도명령 시
 - ※ 특수판매(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사업장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명령 및 집합금지명령('20.6.8., 서울시장)
- 내 용 : 특수판매(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업체의 집합행위금지, 불법집합장소 대관금지
 - ‘명칭’ 불문, 특수판매 목적으로 ‘교육·홍보·세미나’ 등을 위한 모임 또는 유사한 모든 집합행위
 - 사업장외의 장소에서 불법적 방식의 집합행위에 대한 장소 대관행위 금지 포함
-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 사 유 : 사업장외의 장소에서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 위험성이 크고, 특히 방문판매업 등과 관련된 이용자 간 밀접 접촉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사례가 다수 발생 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함
- 효력발생일 : 2020년 6월 29일

2. 위반 시 조치사항

- 위반한 사업자 및 참여자 고발,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시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및 방역비용 구상 청구
- 불법적 집합 행위에 장소 대관하는 자는 형법상 방조죄로 고발 조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